

의안번호	제 8 호
의결 년월일	2002. (제 회)

**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**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년월일	2002. . .

## 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

의안번호

8

제출년월일 : 2002.

제 출 자 : 충청북도교육감

관 련 부 서 : 기획관리국 기획관리과

 제안이유

2001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청북도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.

 주요골자

- 지출건수 : 2건
- 지출결정액 : 502,635,000원
- 지출액 : 502,634,080원
- 잔액 : 920원
- 지출사항
  - 가정중학교 학생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및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336,878,080원
  - 자연재해(폭설)로 인한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실험실습장(비닐하우스 포장) 붕괴에 따른 피해복구비 165,756,000원  
(진천농공고:157,227,000원, 제천농고:8,529,000원)

 예비비지출내역

(단위 : 원)

건명	지출결정일	지출결정액	지출액	잔액	비고
재해피해 복구비 지출	2001. 2. 12.	157,227,000	157,227,000	0	- 진천농공고 실습포장
	2001. 2. 12.	8,529,000	8,529,000	0	- 제천농고 실습포장
배상금 지급	2001. 1. 10.	226,500,000	226,500,000	0	- 가정중학교 학생사고 청구소송 1심 판결
	2001. 8. 30.	110,379,000	110,378,080	920	- 가정중학교 학생사고 청구소송 확정판결
계		502,635,000	502,634,080	920	

 예비비사용명세서 : 별첨

## 2001. 예비비 사용 명세서

## □ 예비비지출 사용현황

(단위:원)

장	관	항	목			예비비 지출결정액	예비비 사용액	잔액	비고	
			세항	세세항	목					
학교 교육	고 학	고 등 교 육	실업교육 지원	실업지고교 운영지원	교 육 사 업 비	학교회계 전출금	136,110,000	136,110,000	0	진천농공고 제천농고
학교 교육	고 학	고 등 교 육	시설과중	학교시설 관리	학교시설 사업비	시설비	29,646,000	29,646,000	0	진천농공고
교육 행정	교육경	교육 청 운	교육청 영	법무관리	교 육 사 업 비	배상금	336,879,000	336,878,080	920	손해배상금
합						계	502,635,000	502,634,080	0	

## □ 예비비지출 사유

## ○ 재해피해복구비지원-

- 2001. 1. 7 자연재해(폭설)로 인하여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실험·실습장(비닐하우스 포장) 12동(진천농공고 7동, 제천농고 5동)이 완파 또는 반파됨으로 신학기 교육과정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소요되는 복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

## ○ 가경중학교 학생사고 청구소송 1심 및 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

- 1998. 10. 26. 16:00경 가경중 1-6반 박세미가 청소 시간에 담임교사로부터 2층 배란다 청소 지시를 받고 급우들과 상의한 바 위 학생이 배란다 청소를 하기로 하고 창문을 넘어 배란다로 내려가다 실족하여 1층으로 떨어져 경추4번, 7번 골절 및 탈구로 영구 불구자가 된 바 학교시설 설치, 관리하자 및 담임교사의 직무집행상 과실을 들어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(손해배상 청구액 : 754,810,868원),
- 1심 결과(2000. 12. 1) 손해배상 판결액 369,181,981원과 가집행 선고가 있었던 바 이에 대한 원고측 지급요청이 있고 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연 2할 5푼을 감안하여 일부를 배상하는 것이 이자부담 및 원고측 강제집행을 면할 수 있어 피고 과실을 30%인정한 나머지 226,500,000원을 지급하였고
- 대전고등법원에서 확정 판결액이 339,000,000원(2001. 8. 16)으로 기 지급액 및 학교 안전공제회의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110,378,080원을 지급하였음.